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14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김예지·주호영·최수진

김소희 · 김선교 · 이종배

박덕흠 • 임종득 • 최형두
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(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)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나,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(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)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,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(안 제15조의2 신설, 제22조제3항제1호 등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예산의 범위에서 다음"을 "다음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제2호 및 제2항에" 를 "제1항제2호에"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) ①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과 '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할 것을 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기등기증희 망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에게 신청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.
 -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등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

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'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⑥ 등록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 및 국립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받은 지방경찰청장 및 국립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은 새로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또는 '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⑦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의 신청, 확인,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등의 적출 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	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
무) ① (생 략)	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	2
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	
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	<u>다음</u>
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	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
의) ① (생 략)	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	<u><</u> 삭 제>
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	
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	
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	
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	
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	
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.	
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	③ <u>제1항제2호에</u>
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	
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	
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·연장자	
순(촌수가 우선한다)에 따른 1	
명으로 한다.	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장기등기증희망자 표

- 시) ① 제15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은 운전면 허증과 '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 임을 표시할 것을 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여부를 확인 한 후 지방경찰청장 및 국민건 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신청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.
-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 만을 접수하는 등록기관은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신청 접수 결과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정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- <u>④</u>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

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 시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'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등록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받은지방경찰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새로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'가입자 및피부양자의 자격 관리'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2조(장기등의 적출 요건) ①ㆍ

- ② (생략)
-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.
- 1.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. 다만,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(생략)
- ④ (생 략)

⑦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의
신청, 확인, 통보 등에 필요한
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22조(장기등의 적출 요건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.</u>
1
<단서 삭제>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